

춘천지방법원 2019. 12. 18 선고 2019가단433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합자회사 B (변경전: 합자회사 C)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2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5. 9. 28. 접수 제50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류영재

별지